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윤재갑의원 대표발의)

의 안 번 호 8027

발의연월일: 2021. 2. 9.

발 의 자:윤재갑·양정숙·홍성국

이학영 • 박영순 • 홍문표

이동주 · 최강욱 · 위성곤

이개호 · 문진석 · 설 훈

의원(12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소상공인의 지속가능한 성장과 경영안정을 촉진하고 고용 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마련됨.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국민들은 공 동체의 이익을 위해 정부의 집합금지 등의 행정 명령과 사회적 거리 두기 방역 지침을 동참하고 있으나, 감염병 사태의 장기화로 소상공인 등 자영업자가 경제적 피해를 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각종 지원 대책을 마련하여 지원하고 있으나, 한시적 지원에 불과하고, 수익이 감소한 상황에서 대출·융자와 이자 상환, 조세 납부 등을 감당하기엔 어려운 상황임.

이러한 어려움을 해소하고, 감염병의 위기를 함께 극복하기 위하여 정부와 지자체로 하여금 조세를 비롯한 각종 대출·융자와 그 이자에 대해 납부 및 상환기간을 유예할 수 있도록 하고, 최소생계 유지를 위 한 무이자 추가 대출을 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안 제29조의2 신설).

법률 제 호

소상공인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소상공인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9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9조의2(장기간 재난 피해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① 정부와 지방자 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장기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 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 1.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험료·연 금 등의 납부기한 유예
- 2.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융자 원금 과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 3.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한 연금,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따라 납입한 공제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추가 대출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29조의2(장기간 재난 피해에
	대한 특별 금융지원) ① 정부
	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
	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장기
	간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다음 각 호
	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
	<u>에 따라 국세·지방세, 건강보</u>
	<u>험료·연금 등의 납부기한 유</u>
	<u> </u> ම්
	2.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른 소상공인의 자금 융
	자 원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u>유예</u>
	3. 관계 법령 등에서 정하는 바
	에 따라 금융회사의 대출금과
	이자의 상환기간 유예
	4. 「국민연금법」에 따라 납입
	한 연금, 「중소기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납입한 공제금,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

「주택법」에 따른 주택청약금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상품을 담보로 한 무이자 추가대출 허가 등 대통령령으로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의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